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문

h·well 국민건강보험

('26.1.1.기준)

모바일 안내문 접속

QR코드 접속(이용정보를 한 곳에 쏘옥)

장기요양급여 이용 정보를 모바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급여이용 안내 동영상, 급여비용 계산, 장기요양기관 찾기,
- 복지용구 급여제품 확인, 복지용구 이용 동영상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필수서류 수령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장기요양기관 찾기

지역, 기관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기관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 장기요양 >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희망하는 기관과 상담 및 급여계약 →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각각 보관 →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이 작성한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동의 후 급여이용

* 희망하는 급여종류가 변경되거나, 계획서에 없는 경우 공단에 재작성발급 요청 필요



본인부담금 납부 ('26.1.1. 기준)

본인부담률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

구분	일반	40%감경	60%감경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등급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구분되며, 서로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가정에서 식사 준비, 이동, 위생 관리, 병원 동행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와 인지자극활동을 하고, 식사 준비·개인위생 등 일상생활훈련을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거나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전신목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욕창, 당뇨관리 등의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신체·사회 활동, 인지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 목욕 도움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는 동안,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지팡이, 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160만원(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연한도액 초과 시 수급자 본인 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을 지닌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과 그보다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나뉘며,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 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40,450원 지급 ('26.1.1. 기준)

월한도액 한 달 (매월 1일~말일)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전액 이용 시)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0%(기초)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0	60,860	40,570	

○ 재가급여비용

• 하단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회(또는 1일) 이용시 금액으로 월별 이용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30분 이상	17,450	2,610	1,570	1,040
60분 이상	25,320	3,790	2,270	1,510
90분 이상	34,120	5,110	3,070	2,040
120분 이상	43,430	6,510	3,900	2,600
150분 이상	50,640	7,590	4,550	3,030
180분 이상	57,020	8,550	5,130	3,420
210분 이상	63,530	9,520	5,710	3,810
240분 이상	70,080	10,510	6,300	4,200

방문목욕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	13,340	8,000	5,330
	가정 내 목욕	80,230	12,030	7,220	4,810
방문목욕 차량 이용하지 않은 경우		50,100	7,510	4,500	3,000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0	3,760	2,500
	2등급	38,720	5,800	3,480	2,320
	3등급	35,740	5,360	3,210	2,140
	4등급	34,120	5,110	3,070	2,040
	5, 인지지원등급	32,490	4,870	2,920	1,9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0	5,040	3,360
	2등급	51,930	7,780	4,670	3,110
	3등급	47,940	7,190	4,310	2,870
	4등급	46,300	6,940	4,160	2,770
	5, 인지지원등급	44,650	6,690	4,010	2,67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50	6,270	4,180
	2등급	64,590	9,680	5,810	3,870
	3등급	59,640	8,940	5,360	3,570
	4등급	58,010	8,700	5,220	3,480
	5, 인지지원등급	56,360	8,450	5,070	3,3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0	6,910	4,600
	2등급	71,160	10,670	6,400	4,260
	3등급	65,750	9,860	5,910	3,940
	4등급	64,090	9,610	5,760	3,840
	5등급	62,460	9,360	5,620	3,740
	인지지원등급	56,360	8,450	5,070	3,380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0	7,410	4,940
	2등급	76,310	11,440	6,860	4,570
	3등급	70,500	10,570	6,340	4,230
	4등급	68,860	10,320	6,190	4,130
	5등급	67,240	10,080	6,050	4,030
	인지지원등급	56,360	8,450	5,070	3,380

※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별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야간·휴일 이용 시 비용 증가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방문간호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6,430	3,850	2,57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8,060	4,830	3,220
	60분 이상	64,690	9,700	5,820	3,880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반)	9%(40% 감경)	6%(60% 감경)
단기보호	1등급	74,060	11,100	6,660	4,440
	2등급	68,580	10,280	6,170	4,110
	3등급	63,350	9,500	5,700	3,800
	4등급	61,680	9,250	5,550	3,700
	5등급	60,000	9,000	5,400	3,600

※ 등급별 1일당 비용,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연 4회에 한해 월한도액 관계없이 연장 이용 가능),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시설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일반)	12%(40% 감경)	8%(60% 감경)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335,050	223,360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3등급	81,540	2,446,200	489,240	293,540	195,690
	요양보호사 수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1등급	88,520	2,655,600	531,120	318,670	212,440
		2등급	82,120	2,463,600	492,720	295,630	197,080
		3등급	77,540	2,326,200	465,240	279,140	186,090

	구분	금액(원)	월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일반)	12%(40% 감경)	8%(60% 감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	2,237,700	447,540	268,520	179,010
	2등급	69,210	2,076,300	415,260	249,150	166,100
	3등급	63,800	1,914,000	382,800	229,680	153,120

※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 적용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별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기타 안내사항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급여계약 시 수급자·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상호존중을 명시한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가족은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줌마'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호칭을 사용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요양원(시설급여)	요양병원
장기요양 등급(시설급여) 필요	장기요양 등급과 상관없이* 입원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치료나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한 의료·간병비 등 혜택 없음. 다만, 입원 중에도 복지용구 구입·대여는 가능(일부품목 제외)

노인학대 상황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